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2. 14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1월 24일
- 나. 발 의 자: 이규선 의원 외 4명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2월 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2. 2. 11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규선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 -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이 제정(시행 2018. 1. 1.)됨에 따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 등 상위 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조례 위임 근거법령에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을 포함하여 조문 정비(안 제1조)
  -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개정(안 제2조 ~ 안 제3조)
  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원배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이 제정(시행 2018. 1. 1.)됨에 따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 등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본 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인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 중 자원순환기본계획, 자원순환성 평가 등이 2018. 1. 1. 시행된 「자원순환기본법」과 중복 운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7. 11. 28. 일부 조문이 삭제되는 등의 일부 개정되었음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위임 근거법령에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을 추가하여 위임 근거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,
-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의 근거를 신규 제정된 「자원순환기본법」에 따라 변경하였으며,
-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 법률인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이 2018. 1. 1. 시행되어 조례의 근거 법률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과 더불어 이원화(二元化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2년 1월 일  
발의자: 이규선 의원 외 4명

## 1. 제안이유

「자원순환기본법」이 제정(시행 2018. 1. 1.)됨에 따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 등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위임 근거법령에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을 포함하여 조문 정비  
(안 제1조)
- 나.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개정(안 제2조 ~ 안 제3조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순환기본법」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2. 1. 20. ~ 1. 25.): 의견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자원순환기본법」”으로, “제4조제2항”을 “제5조제2항”으로, “관할구역”을 “관할 구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자원재활용”을 “자원재활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상의무”를 “법상 의무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7조제4항”을 “법 제12조제3항”으로, “수립하고, 이를”을 “수립하여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고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)”을 “(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1조제1항”을 “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”를 “구청장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<u>관할구역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</u></p> <p>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자원순환기본법</u>」 및 「<u>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<u>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구청장의 책무) ①----- ----- ----- 「<u>자원순환기본법</u>」----- ----- 제5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관할 구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. · 2. (생략)

3.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

4. (생략)

5.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

6. (생략)

제3조(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)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제7조(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)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「자원의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자원재활용 -----  
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 
-- 법상 의무-----  
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----- 법 제12조제3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-----  
-----.

제4조(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) -----  
----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31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과태료 부과 · 징수 등) 구청장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



<p><u>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</u>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, 이에 따른 부과·징수, 재판 등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</p> 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u>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1조</u>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50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13조(시행규칙) -----</p> <p>-- <u>필요한</u> -----</p> <p>-----.</p>
---	--